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7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장애인등록 차량 및 다동이자녀 가정 소유 차량의 공용주차장 감면규정을 서울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,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규정 신설 및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차량의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을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에서 서울시와 동일하게 『장애인복지법』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로 변경함(별표1, 비고 제7호가목)
- 나.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인용 조문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함(제3조제8호, 별표1, 비고 제7호‘나’·‘다’목 및 제15호)
- 다. 다동이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할인율을 「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」에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‘다동이 행복카드(막내가 만 13세 이하 발급)’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할인으로 변경함(별표1, 비고 제17호)

라. 공영주차장내 부대시설인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자와  
공무수행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주차료 감면규정을 신설함.  
(별표1, 비고 제20호 및 제21호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 음”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주차장법」(법률 제10221호, 2010.3.31) 제9조 및 제14조 등
- 2) 「장애인복지법」(법률 제10220호, 2010.3.31) 제32조
- 3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1029호, 2011.8.4) 제4조
- 4)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10503호, 2011.3.30) 제19조
- 5)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2910호, 2011.4.30) 제8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1.9.8 ~ 2011.9.28) 결과 : 의견 반영
- 2) 감사담당관 자차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의견 반영
- 3) 조례규칙심의회(2011.9.29) : 일부 수정
- 4) 서울특별시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및 제3조 본문 중 “각 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각각 한다.

제3조제8호 중 “제72조의3”을 “제88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관련, 별표 1 “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”의 비고 중 제7호, 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0호 및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

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2호·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

- 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
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
17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
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(이하 이 호에서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학교 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- 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 :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
- 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: 정기권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
21. 공무수행차량,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b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②</b> (생략) ③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부과한다. (후단 생략)</p>	<p><b>제2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~ ②</b>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조(주차거부금지) 주차장의 관리자</b>는 법 제10조의2제1항·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. 1.~7. (생략) 8.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7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</p>	<p><b>제3조(주차거부금지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 ----- 1.~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제88조 ----- ----- -----</p>
<p>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비 고 -</p> <p>1. ~ 6. (생략) 7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	<p>[별표 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비 고 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 다만,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가.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 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</p>	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</p>
<p>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</p>	<p>나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2호·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</p>
<p>다.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</p>	<p>다.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</p>
<p>8. ~ 14. (생략)</p>	<p>8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15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</p>	<p>1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에 따른 시장·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.</p>
<p>16. (생략)</p>	<p>16. (현행과 같음)</p>
<p>17.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로서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(단, 막내가 만13세 이하)인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</p>	<p>17. 「다둥이 행복카드」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,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 50을 할인한다.</p>
<p>18.~19. (생략)</p>	<p>18.~19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

< 신 설 >

< 신 설 >

개정안

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(이하 이 호에서 "공공시설"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 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 : 수강 시마다 90분 면제

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: 정기권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

21. 공무수행차량,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.